

#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연구실에서 사용자가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 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본교의 교수, 연구원, 학생으로서 실험실에서 연구, 실험·실습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5. 안전환경관리자라 함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자 중에서 안전환경관리자로 위촉된 자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라 함은 해당 연구실의 안전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실별로 선임된 자를 말한다.

## 제2장 조직 및 직무

**제3조(조직)** 본교의 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

1. 연구실 안전관리총괄책임자는 총장으로 하고, 총괄부책임자는 경기드림지원실장으로 한다.<개정 2020.08.05.>
2. 각 연구실 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학부(과)장으로 하고, 부책임자는 해당 담당교수로 한다.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와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아래와 같다.

1. 학부(학과)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 : 각 학부(학과)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학부(학과)의 장으로 하며, 학부(학과)내의 연구실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학부(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기관에 속한 연구실의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는 해당 기관장으로 한다.
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가.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실별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정·부의 2인을 둔다. 정은 해당 연구실의 담당(지도) 교수가 되며, 부는 사용자 중에서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정이 임명한다.

**제5조(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는 아래와 같다.

1. 안전관리자의 직무
  - 가. 연구실 사고발생시에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와 조언
  - 나. 사고예방을 위한 순회점검 및 연구실 안전수칙 위반자에 대한 지도와 조치 건의
  - 다. 연구실 상황에 따라 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

- 라. 안전관리위원회가 부여하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업무
- 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정”의 직무
  - 가. 연구실의 시설물, 기기,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에 관한 사항
  - 나. 연구실 사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 다. 연구실 운영과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라. 연구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부”의 직무
  - 연구실 안전관리자 정의 지시에 따라 연구실 안전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제3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제6조(자체안전점검)**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실 안전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대하여 연구실 자체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과학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자체안전점검표에 의하여 매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점검결과 연구실의 시설과 장비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 될 경우 즉시 연구실의 사용을 제한하고, 이를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자체점검의 기록은 안전환경관리자가 안전점검 시에 확인한다.

**제7조(안전점검)** 안전점검은 안전환경관리지침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가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1. 개인안전 장비관리
- 2. 전기 안전
- 3. 소방 안전
- 4. 화학약품관리
- 5. 폐기물 안전
- 6. 가스 및 위험물 안전
- 7. 기계설비 안전
- 8. 기타 연구실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

**제8조(정밀안전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외부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일정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제9조(안전교육)** 안전교육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

- 1.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실 사용자를 대상으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담당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 분야별로 1명씩 위촉한다.
- 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실험·실습 전에 1시간 이상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3.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사용자에게 안전수칙에 대한 제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교육의 내용)** 안전교육의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연구실별로 받아야 할 과목은 다르게 적용한다.

- 1. 개인안전 장비관리 - 전체
- 2. 전기 안전 - 전체
- 3. 소방 안전 - 전체
- 4. 응급처치요령 및 비상시 행동요령 - 전체

5. 실험장비 및 기구의 취급 - 전체
6. 화학약품관리 - 화학약품 실험실 대상
7. 폐기물 안전 - 폐기물 발생 실험실 대상
8. 가스 - 가스 사용 실험실
9. 공작실 안전 - 기계를 사용하여 가공하는 실험실 전체
10. 사고시의 행동요령 - 전체

**제11조(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용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한다.

**제12조(안전사고 예방조치 등)** 자체안전점검이나 안전점검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

1.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기드림지원실장에게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08.05.>
2.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연구의 시설이나 장비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경기드림지원실장에게 보고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08.05.>
3. 위험물 보관 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화재·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연구실에는 경보장치, 소화기 등 소방안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고가의 실험기기가 설치되었거나 폭발 위험성이 있는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사고로 인한 사용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별도의 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3조(점검기록 등의 비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 안전관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선·해임 사항
2. 자체점검 기록
3. 안전교육 기록
4. 기기 및 분석기기의 수리 내역
5. 시약 및 위험물 사용량 확인과 보존 상태 이상 유무
6. 폐기물 안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 조치사항

**제14조(실험실별 안전수칙 등)** 이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안전수칙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실험실의 특성에 맞게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가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2014. 3. 1)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 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